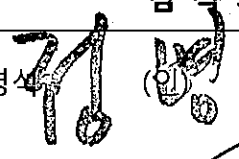




단가결정 협의록

공사명 : 충신 앵커시설(문화예술) 리모델링공사(충신동 1-165 외 2필지)

일 시	2018년 05월 15일	장 소	현장사무실
회의제목	기계설비분야 장비설치공사 설계변경 단가협의(1차, 최종)		
참석자명단			
발 주 처 서울주택 도시공사	부장	정병석 	현장대리인 김재호 
	담당감독	김길현 	
회 의 내 용			
1. 회의개요			
<p>-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『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』 및 हे우 충신동 제2018-0511-01호 (2018.05.11.) "설비 가스온수기 관련 실정보고"에 의거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상대자인 헤우이앤씨(주) 간에 설계변경 단가를 협의코자 함.</p>			
2. 회의내용			
<p>■ 헤우이앤씨(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설치공사(가스온수기)의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며 해당 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료됨. - 기존비목은 계약단가,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(=87.748%)을 곱한 금액으로 요청함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114111526345041</p>			
<p>■ 서울주택도시공사(자체감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공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,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점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. - 지방계약법 제74조 제4항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존비목은 계약단가(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단가),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(=87.748%)을 곱한 금액 적용하는 것으로 함. 			
3. 회의결과			
<p>-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, 장비설치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결정은 기존비목의 경우 계약단가, 신규비목은 낙찰률(=87.748%)적용한 금액으로 협의 완료함. 끝.</p>			